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자립 계기마련을 유도하고,
-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신설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의 통합관리로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 (안 제3조)

- 전세입주 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1년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 세대로 하고
-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은 수급자로서 영세상행위 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기타 사업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함.

나. 전세 입주보증금 (안 제5조, 제6호, 제8조)

- 전세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이하 무이자로 하고
- 융자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토록 함.

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안 제7조, 제9조)

-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 무이자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기간 경과시에는 5%의 연체이자를 징수 토록
하며,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함. (안 제9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상환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1조)

마. 기존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구미시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자금은 별도 신설되는 특별회계 소관으로 이입조치 함.
(안 부칙 제2조, 제3조)

3. 참고자료

-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
-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입주자 등 무주택자를 선정하여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4.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등

제3조(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전세입주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주거형대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 수급자로서 계속하여 구미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②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대학이상의 자녀 학자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주 및 용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형편 등을 조사하여 구미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세대를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 및 용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주택의 전세계약은 읍·면·동장 임회하에 당사자간 계약한다.

②임대인과 임차인은 용자 지원한 전세입주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읍·면·동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이때 용자한도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내로 한다.

④입주세대가 희망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내에서 제3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⑤전세계약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 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00만원 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②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시장은 용자대상자의 명부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8조(용자기간) 전세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용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신청절차) ①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용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구미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세대는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입주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 3년 ~ 5년

2. 납입금액 : 5만원 ~ 2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칭은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③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등을 감안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용자금반환) ①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용자받은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용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중에 구미시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임대기간중에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5.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용자를 받은 자가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2조(보증금의 회수) ①시장은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 전세입주세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용자기간이 만료되면 용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 ①생활안정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 상환한다.

②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 회수된 자금은 수급자의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융자할 수 없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저소득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회수융자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한다.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21조(감면조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등) ①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 한다. 다만,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자금은 별도 신설되는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 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